파주시 고시 제2022-23호

코로나19 확산 방지 사적모임을 위한 공간임대업 행정명령

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파주시 내 사적모임을 위한 공간임대업에 대하여 파티룸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.

2022년 1월 18일

파 주 시 장

1. 적용대상 : 파주시 내 사적모임을 위한 공간임대업

2. 적용기간 : 2022. 1. 18.(화) ~ 별도 해제시까지

3. **명령내용 : 사적모임으로 이용자들 간 친밀한 관계에서 식사·노래·대화 등 활동이 가능한 공간임대업은 파티룸 방역수칙 준수**

4. 처분사유 :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인 공간대여업 등에 대한 행정명령으로 감염확산 방지 및 시민들의 안전 도모

5. 처분대상 : 파주시 내 사적모임을 위한 공간임대업 등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

6. 효력발생시점 : 2022. 1. 18.(화)

7. 처분 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호, 제2호의2, 제2호의4 및 제83조 제2항, 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 제2호. 흥행, 집회.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2호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.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
제83조(과태료) ② 제45조의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.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8. 처분서의 교부요청

- 처분 당사자는「행정절차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9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

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10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」제83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이하,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」제49조에 의한 집합제한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11. 담당부서

- 행정명령 관련 : 파주시청 안전총괄과(☎031-940-4691~3)
- 단속 관련 : 파주시청 평화협력과(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사각지대 대응반)
(☎031-940-2971~3)